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65
----------	-----

2023년 6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김영옥 의원(찬성 49명)
2.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3.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6월 2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영옥 의원)

### 1. 제안이유

-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이며, 이 중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최저인 0.59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가족을 우대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다자녀 가족이 서울시의 여성관련시설인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 및 보육실, 생활문화교육의 이용료 면제 근거를 규정함 (안 제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양성평등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 (2023.6.8.~6.12.) 결과 : 의견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 1 조례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다자녀 가족이 서울특별시의 여성인력개발기관인 여성발전센터의 보육실, 직업교육 및 생활문화교육 이용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

#### 2 주요사항 검토

##### □ 여성발전센터 이용료 지원범위 확대 (안 제19조제3항)

- 본 개정안은 현행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여성인력개발기관인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과정 및 보육실 이용료의 20%를 감면하던 것을 직업교육과정, 생활문화교육 및 보육실 이용료의 전액을 면제하여 다자녀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 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 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현행	개정안
<p>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교육과정 및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료 각각 면제.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는 각각 100분의 50을, 「서울특별시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에게는 100분의 20을 줄인다.</p> <p>&lt;신 설&gt;</p> <p>2. (생략)</p> <p>3.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u></p>	<p>1. ----- ----- ----- ----- ----- ----- ----- 100분 의 50-----.</p> <p>2. <u>제1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문화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이용료 면제</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u>따라 해당 이용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줄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약 0.81명으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의 합계출산율은 약 0.59명<sup>1)</sup>으로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심각한 상황임.
- 이러한 서울특별시 초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의 영역에서 다자녀 가족을 우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및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여성발전센터 이용료 등은 세입처리되어 여성발전센터 운영비 등으로 활용되는 바, 이용료 면제에 따른 세입 감소로 인해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범위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필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1) 통계청,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 시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p.11.

### 집행기관 의견

- 이용료 감면범위 확대에 따라 이용료 수입이 약 92백만원 감소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운영비 보전 예산 확보 필요

- 또한 부칙 제7106호(2019.5.2.)에 따라 현행조례 제19조제3항제3호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규정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 여성인력개발시설인 여성발전센터의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에 대해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이용료 감면범위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로 인해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예산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65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김영옥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박강산,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박칠성, 서상열,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병윤, 이상욱, 이새날, 이종배, 이종태, 임춘대, 장태용, 채수지, 최민규, 최윤희,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49명)

## 1. 제안이유

-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이며, 이 중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최저인 0.59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가족을 우대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다자녀 가족이 서울시의 여성관련시설인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 및 보육실, 생활문화교육의 이용료 면제 근거를 규정함 (안 제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지방자치법 , 양성평등기본법」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7호 중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단서 중 “각각 100분의 50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에게는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문화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이용료 면제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교육이용)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해당 교육과정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u>‘다둥이 행복 카드’</u> 소지</p> <p>③ (생 략)</p> <p>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② (생 략)</p> <p>③ 시장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p> <p>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교육과정 및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 : 해당 이용료 각각 면</p>	<p>제17조(교육이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다둥이 행복카드</u>’ 소지자</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1. ----- ----- ----- -----</p>

제.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는 각각 100분의 50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에게는 100분의 20을 줄인다.

<신 설>

2. (생 략)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줄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00분  
의 50-----.

2. 제1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문화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이용료 면제

3. (현행 제2호와 같음)

<삭 제>